

기업림 경영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최 종 천 / 강원대 교수

1. 문제점

가. 기업림에 대한 인식의 부족 前略……

기업림이 그동안 우리 임업에 공헌한 역할, 즉 대자본이 없이는 불가능한 산림투자 사업의 전개, 높은 위험부담의 감수, 영세한 산림소유구조하에서 규모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업림에 대한 임지를 놓고 행정부처의 조정없이 비업무용 판정은 경제발전 이전의 원시공동사회를 이상향으로 추구하는 집단이라면 모를까, 현재 임업의 여건하에서 생존의 길을 찾지 않으면 안되는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견解이다.

우리가 기업림에 대해 느끼는 것이 가진 자에 대한 반감이라면 기업림의 소유구조를 변화시켜야 하고 자본축적과정에 대한 불만이라면 기업림의 경영방식과 형태를 바꾸도록 해야 하며, 재산 승계과정에서 나타나는 비리 내지는 탈법적 조치에 대한 지적이라면 관련된 법적제도와 운영을 개선

해야 한다. 그리고 만일 기업림에 대한 사회의 비판이 전혀 근거나 없거나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사회의 이해부족에서 나온것이라면 국민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이를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

최근 부동산 투기라는 사회적 비판에서 일시적 해결방법으로 기업림(산업비림, 범인독립 소유산림)도 다른 토지와 마찬가지로 비업무용으로 판정되어 부동산투기꾼 동일시 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산림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림에 대한 사회의 비판적 시각을 올바로 인식하는 일은, 기업림경영자들로 하여금 현재 우리사회의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미래 기업림의 모습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것인가에 대한 좌표를 제시해주게 되므로서 이들로 하여금 보다 바람직한 사회적 존재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을 것이다.

나. 임업경영기반의 취약 ① 임지소유의 분산화

“
성실한 기업의 기업림마저 부동산투기 시각으로
일괄 매도하여 비업무용으로 취급하는 것은 임업을
이해 못하는 소치이다.
기업림은 개인이 장기사업에 투자할 수 없는 취약점을
보완하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현재 기업림의 소유 분포 상황은 전반적으로 한곳에 집중되어 있는 업체가 몇 안된다. 있다고 해도 작은 면적의 소유 업체만이 한 지역에 있을 뿐이다. '91년말 업체별·도별 소유현황(산림청 경영계획과 통계자료)을 보면, 각 업체들의 기업림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각도에 분산되어 있으며 제일 많은 면적이 있는 곳은 경상북도로 38,705ha이며, 강원도는 33,219ha로 두번째로 많은 면적을 소유하고 있다. 강원도내에서도 14개 업체의 기업림이 다시 15개 시·군에 분산되어 있는 형편이어서 소유규모가 업체당 200ha미만으로 나타나 대단위의 집약적 경영이 어려운 상태이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9개 회사는 약 88,701ha의 기업림을 131개 시·군으로 분산·소유하고 있었다. 강원도에 2,002ha를 소유하고 있는 세풍제지(주)는 13개 시·군으로 분산·소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회사도 이와 같이 경영이 전제되지 않는 분산된 임지소유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② 임도시설 및 관리

임도는 사람에 있어서 혈관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므로 산림의 합리적인 경

영을 위해서는 적정한 임도가 설치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활용도가 높아진다.

'91년말 현재 산림청 경영계획과의 『업체별 영림계획에 의한 사업계획대 실적』에 의하면 영림계획을 작성한 업체는 21개 업체중 19개 업체이고, 태영광업과 동해탄광은 산주작성기피로 영림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았으며, 영림계획을 세운 19개 업체 중 산업비림에 투자하여 계획을 수행한 업체는 16개 업체에 불과하다. 그 중 임도는 9개업체만이 계획을 세워 추진중에 있으며 나머지 7개업체는 전혀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9개업체의 임도계획에 의한 임도 개설 현황을 보면 총 계획임도길이는 152.36km에 이르나 실제 개설길이는 120.21km로 나타났으며, 이중에서 임도를 가장 많이 개설한 업체는 동해펄프로 60.35km이다. 이것은 실제 개설 총 길이의 약 5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머지 업체들은 결국 평균 8.55km밖에 개설하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임지가 개설된 곳은 철저히 관리되어야 하나 비용문제로 그 기능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 그리고 국가에서의 임도사업문제도 임업경영을 위한 영세산주 및 임업진흥촉진지역으로 우선적으

로 선정하고 있어 기업립의 임도개설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③ 임업노동력과 조림지 관리

과거 반세기 동안 우리 경제 사회의 변화가 임업에 던져준 가장 큰 충격은 노동력 부족과 이로 인한 급격한 노임상승이라 할 수 있다. 1960년 이후 농산촌의 극심한 인구유출 현상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인구 대비 농림업 취업자수는 1965년 56% 수준에서 최근 20%수준으로 격감했다. 이러한 농산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농업노동 뿐 아니라 임업노동의 양적, 질적 부족현상을 심화시켜 왔다.

임업생산은 장기간의 임목생육기간을 경과한 후 이루어지며, 이 기간에는 지존, 식재, 하예, 가지치기, 간벌과 주벌등 여러 시업이 행해지고 여기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게 된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조림과 조림지 사후관리가 부진한 이유는 농산촌 인구의 유출로 인한 노동력과 노임상승을 들고 있다. 따라서 인구의 도시집중화, 농산촌 노동인구의 고령화, 임금의 상승, 3D 기피 현상으로 노동인력이 크게 부족한 이시점에서는 이에 대체할 정책적, 구조적 대안을 찾으므로서 기업립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산지관련법규상의 문제

산림과 관련된 현행법을 보면 국토이용 관리법, 산림법,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도시계획법, 수도법, 초지법 등 최소36개법이 상호보완 또는 상충해 가면서 고유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고, 중앙행정기관만도 건설부, 농림수산부, 내무부, 교통부, 동력자원부, 환경처, 산림청등 12개부처등 다원화되어 있어 이들 상호간의 영역 확대

를 둘러싼 횡적인 업무조정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예를들어 임지의 매매에 대하여 살펴보면, 임지매매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한 강력한 의지때문이라는 것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국토이용 관리법상 전 국토의 46%는 규제지역으로 매매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허가 이외에 산림법의 임야매매증명제로 인한 이 중 삼중규제로 매매가 일체 중단되므로써 임업경영구조개선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임업경영의 가장 구조적인 문제점인 경영규모화를 위한 교환·분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서 기업립경영자는 관리를 포기하고 더 이상 산림에 투자하지 않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예의 검토하여 부동산 투기방지와 산림에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키는 적절한 조화있는 정책개발이 있어야 한다.

또한, 최근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의 일환으로 토지초과이득세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법인의 경우 그 면세 대상을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보전임지중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중인 때」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 주업의 판정기준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에서 「임업과 다른 사업 경영시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 자산중 임업에 사용하는 자산 가액의 50/100이상일 때」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비림육성요강에 따르면 연간 5,000m³이상의 국내산 원목을 원자재로 이용 또는 가공하는 사업체에 대해 기업립을 소유 권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규정에 부합되는 기업체는 거의 없으며 관련이 깊은 펄프제조업과 탄광업체의 경우 임업이

주업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비림쪽의 자산 가액이 50%를 뜯어내 비업무용으로 취급 받아 소유한 산림에 대하여 과다한 세금이 부과되는 등 기업림의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라. 기업림 원목수급기여도 저조

우리나라의 국민1인당 목재 소비량은 약 0.2m^3 로써 선진국의 $0.6\text{m}^3 - 1.0\text{m}^3$ 에 비하면 적은 편이지만, 계속되는 인구증가와 국민생활 수준 향상으로 핵심, 펄프, 종이, 섬유판의 제조에 사용되는 목재수요량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더구나 전세계적으로 산림이 줄어들고 자원보유국에서는 원목수출을 점차 금지하고 있으며 국민보건과 휴양, 야생동물의 보호 등 산림의 공익적 정책으로써 생산을 억제하고 있어 전체적인 목재부족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본래 기업림이란 자체적인 목재자급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적 이용을 담고 있으나 우리나라 기업림의 경우 설문지를 통하여 원목수급 기여도를 알아본 결과로는 최근 5년간 평균 약 15%정도밖에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산림은 유령림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당한 기간동안 변동이 없을 것이므로 해외 산림자원의 장기안정적 확보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기업림의 활성화 대책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기업림경영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점들은 아직 막연한 불안감으로 표현되고 있을뿐, 조직적

체계적 분석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식의 기본 방향 모색이라는 두 과제에 대하여 단시일 내에 그 골격을 형성시켜야 할 필요성이 점증되고 있다.

국내 산림자원이 빈약하고,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목재자원의 급증은 필연적으로 해외수입의존도를 심화시키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산림자원문제에 관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기업림의 육성에 따른 국내산림자원의 육성과 더불어 해외산림자원의 안정확보 체계 및 확충방안을 동시에 해결하여야 한다는 데 어려움이 있다.

우리 실정에 부합되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먼저 대내적으로 기업림소유자는 기업림의 합리적 육성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깊이 인식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국내의 법제 및 제도의 개선책도 과감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해외 산림자원개발에 적극적으로 대처함과 동시에, 한국인의 영속적인 생존과 건강 삶을 위해 귀중한 자산이며 수입할 수도 없는 우리나라 산림자원의 수종별 영급구조를 과감히 개선하여야만, 앞으로 50년-100년 이후에는 산림이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간접적 효과가 인간생활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 입증하게 될 것이다. 문제점에 따른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가. 국민과 기업주의 인식 전환

한국임업에서 기업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기업림에 관한 체계적인 학술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못가진 자는 가진자에게 무조건적인 비판과 함께 부의 균

“
산림경영은 장기사업임으로 단기소득사업을 겸영하면서
지속적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지·펄프·탄광등 회사들의 자가원료를 조달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산림이 자산가 총액의 50%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비업무용 토지취급을 받는 현행제도는 고쳐져야 한다.”

등분배를 요구하게 되고 이는 가진자의 대표적인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비판 및 반감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경제가 고도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기업은 사회의 주역으로 등장하여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키게 된다. 이때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와 비판이 사회로 부터 나타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극적인 견해와 적극적인 견해로 구분할 수 있다.

본인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적극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는 기업임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활동이 생태적 환경에 미치는 책임으로서 크게 자원부족과 관련된 책임과 환경오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기업임 소유주는 국민들에게 부동산투기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며, 번돈을 자기 마음으로 쓰려고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장기적으로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기업임마다 그 애말로 과거 수십년간 정부로부터 기업임 소유명령을 받아 산림투자를 통하여 사회에 봉사하였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인식시켜야 한다.

한편, 정부의 정책도 부동산 투기방지 억제측면에서만 수립하다 보니 임업경영적 측면에서는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즉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다른 단기 소득사업을 겸영하여 그쪽에서 나온 이득으로 산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가 되어야 하겠는데, 오히려 법적으로 주업의 개념정의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에 의하면 「임업과 다른 사업 겸영시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법인 자산 중 임업에 사용되는 자산가액의 100분의50 이상일 때 주업」으로 인정받게 됨으로 해서 실제 임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도 겸영하고 있는 다른 한쪽의 자산가액이 크기 때문에 주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주객이 전도되어 비업무용토지도 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인정해준 법인독립가와 산업비림에 대하여는 누가 소유하느냐 하는 소유개념보다 이제까지 누가 보전입지를 지원화하였느냐에 우선을 두어 경제를 실천할 수 있도록 기술적·정책적 배려를 하여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어야 한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낙후된 분야는 임업분야로 보인다. 기업임에 대한 부정적 요인

내지 악화요인들을 제거하려면, 일차적으로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본체의 사회적 역할들을 현재의 경제발전추진자 역할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까지 산지에 투자한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기업림의 사회윤리기준을 정하여 임지를 통한 부동산 투기같은 것은 하지 않는다는 등의 행동기준을 정하여 이를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나. 임업경영기반 조성

① 임지소유의 집단화

기업림의 경영규모를 논의할 때는 규모의 대·소와 관련된 경제성 및 수익성의 측면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삼림을 경영하는데 있어서 삼림자원을 보호 육성하는 동시에, 벌채생산을 계속하여 한 경영체 내에 유통사업과 목재생산이 지속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경영 규모가 요구된다.

지금처럼 경영규모가 여러 구역으로 분할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산림사업의 작업 단위가 과도하게 세분되고 벌채로 인한 목재 공급의 양도 역시 감소하게 되어 실질적인 삼림경영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이런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임야관리계획을 세워 소규모로 분산 경영되고 있는 기업림을 대규모로 집단화 시키도록 해야 한다.

집단화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는 각각의 기업림에서 소유림이 가장 많이 있는 지역에 대부림과 분수림 그리고 지상권설정림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정책 개발을 도모해야 한다. 이와같은 기업소유림의 집단화는 분산된 소유산림에서 파생되는 경영상의 불리성을 극복할 수 있게 되며, 기술의 집중적

인 도입과 개발, 그리고 국가지원의 집중을 유도하여 대규모 기업림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임도시설 확충 및 관리비 지원

최근 자원 내셔널리즘의 대두로 원목수입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에서 목재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또한 임업노동력의 부족과 노동임금의 상승 등으로 삼림경영이 점차 힘들어지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삼림작업의 기계화를 통한 삼림경영의 합리화를 이루어야 한다. 기계화 작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생산기반 시설인 임도의 개설은 필수적인 선결문제로 꼽을 수 밖에 없다.

임도가 개설되면 삼림에의 접근이 용이해지므로 보다 효율적이고 집약적인 삼림경영과 관리가 이루어지며 또한 벌목과 집·운재, 그리고 사업 등의 산림작업을 할 때에도 비용이 절감되므로 경제적이고 과학적인 삼림경영이 가능해질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최고 목표인 수익성 문제를 볼 때, 임도개설은 필연적이므로 삼림경영에 필요한 10m/ha 정도는 확충할 필요가 있다. 임도를 개설하고 관리하는 데는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서 임도개설을 지원하게 되고 또한 주로 공영사업체에서 실행하고 있다. 임도는 임업경영기반시설로서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임도정책은 국비에 의한 공공사업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과 삼림의 복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임도가 제기능을 수행하자면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지만 기업의 투자도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에서 규모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기업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개설과 관리비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③ 임업노동의 육성

우리나라의 현 임업노동자 문제는 임업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농산촌 인구유출에 의한 노동력 부족 및 임금 상승추세와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농산촌 노동력 육성을 위한 직·간접적인 정책과 병행하여 임업 내부적인 노동자 육성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산림녹화에 치중된 산림작업은 단순노동에 의한 작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육림, 간벌, 임도시설 및 관리, 휴양림 조성 등 전문화된 작업과 기계화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산림경영 노동력의 전문화화와 산림작업 단의 효율적 이용은 필연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기업림 경영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산림작업단을 검토하여 기업림이 소재한 지역의 관리는 이들과 연계하여 조림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래 새로운 기업림의 창출은 이들 작업단의 효율은 이용 여하에 달려 있다 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다. 임업기본법 제정 및 관계법규 개정

① 임업기본법 제정

임업기본법의 입법화는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기업림 문제를 포함한 임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업에 대한 기본 철학의 재정립과 전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임업에 관한 주요 법률로는 산림법과 산림조합법이 있다. 산림법은 내용 역시 자원법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며, 현재 산림조합법으로는 사유림 임업진흥과 산주들의 경제적인 권익보호에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앞으로 임업을 산업으로서 발전시키고 임업종사자의 경제적·사회적 지

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업증시의 경제 법으로서의 임업기본법이 제정되어 임업의 기본적 경제정책을 추진할 때 기업림경영도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기본법 제정 이전에는 산림법을 검토하여 산림경영에 대한 규제완화로 산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기업림경영을 활성화 하여야 하며 목재자급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토지초과 이득세 및 법인세의 개정

임업은 구조적으로 자본의 회임기간이 길고 이윤이 낮아 개인이 투자할 수 없는 취약점 때문에 자금이 많은 기업에 의해 투자되고 경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 그러한 맥락에서 산림법 제42조에 『산업비림의 소유』에 관한 규정을 두어 기업림의 소유권장을 실시하여 왔으나, 토지초과 이득세와 법인세의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주업의 판정기준 때문에 기업림의 경영은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주업판정기준을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기업림(산업비림, 법인독립가의 소유산림)에 대하여는 다른 사업의 경영에 관계없이 주업으로 인정」해야 하며, 투기대상인 준보전임지와 삼림경영을 위한 보전임지를 확인하 구별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면세대상에 포함시켜 기업림에 투자를 유도하여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

라. 해외산림자원 확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해외산림자원개발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조직적·체계적 분석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해외산림자원 개발 수입을 위해서는 진출대상국의 여건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개발대상국 선정기준에서 볼 때 우호관계가 있는 자원보유국을 우선으로 하되 특정지역 혹은 어느 한 국가에 편중하므로써 올 수 있는 공급분야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개발수입선을 다각화 시킬 필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단기적으로 아직까지 원목수출의 규제가 적은 중남미, 대양주, 아프리카 등지로의 조기확대 다각화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여야 하겠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원보유국의 정책에 따라 목재공업을 진출시켜 우리의 축적된 기술을 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 자원확보시책 면에서 깊이 연구해 볼 때, 현재 기업에서 축적된 조림기술제공에 의한 분수조림을 적극 검토해야 하겠다. 열대지방의 임목생장은 온대지방에 비하여 연간 적어도 10배 정도 빨리 자라므로 분수조림의 가능성이 있으며, 일본의 열대지방 진출의 경우는 좋은 예가 된다.

끝으로 해외산림자원 개발 투자에 대한 재정, 금융, 세제 및 보험 등에 제도적 지원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국내기업이 자본축적도가 낮고 재무구조가 변약하여 해외산림개발을 수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위험부담을 안고 해외에 진출하는 산림개발업체에 대

하여 해외개발 목재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 및 배당소득에 대한 범인세 감면 등 조세상의 혜택을 주고 해외자원개발기금 조성 운영을 통하여 적극적인 금융지원은 물론이며 현행 해외투자보험외에 자원개발용자보험약관을 신설하여 임업을 활성화 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본 연구는 독립가협회, 산림청 경영계획과, 강원도청 산림국 및 기업림 소유형령업체를 대상으로 기업림 경영실태 및 경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결론적으로 기업림 활성화 대책은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 지역적이고 단기적인 정책으로서는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없으므로 세제·금융정책, 국토 및 환경정책, 해외자원정책 등 모든 외생적인 변수를 총망라하여 부처간의 상호보완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장기적·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만, 임지의 부동산투기 억제는 물론, 기업림 활성화에도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의 조상이 물려준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잘 가꾸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사명감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것이다.

버리면 쓰레기, 모으면 자원